

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확인서

승인 번호	교육부고시 제2026-243호		
신청 내용	① 지역협업위원회명 : 대구·경북 지역협업위원회		
	③ 전담 기관 및 참여 기관 전담기관 : 경북대학교 기획처 재정전략과 참여기관 : 경북대학교 등 21개 대학		
	④ 주요 규제특례 신청 내용 : 비전임교원 정년(65세) 기준 예외 허용 등		
지정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화지역 지정 목적 및 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목적) 지역 산업 수요 기반의 고등교육혁신 지원 및 대학의 혁신성 강화 - (기간) '26.06.12 ~ '30.06.11. 및 기 부여 잔여기간 ○ 특화지역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, 기간 및 범위,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		
	규제특례 내용	적용대상 (고등교육기관)	적용기간
	<p>① 비전임교원의 정년(만65세) 예외 허용 (규제) 「고등교육법」 제17조, 제14조의2 (조건부수용) 시니어 전문 인력을 비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첨단기술·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무분별한 예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준수 조건></p> <p>▶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정년 예외 적용 대상(출연연 연구원 및 일정 산업체 경력, 국내외 전임교원 등) 및 요건(일정 이상의 교육·연구 실적, 대학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) 구체적으로 규정</p> </div>	경북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	'26.06.12 ~ '30.06.11.
<p>② 교지·교사 임차 활용 범위 확대 (규제) 「대학설립운영규정」 제9조 제1항 2호 가목, 나목</p> <p>① (경북대) 교지·교사를 임차해 활용하는 경우, 동일 광역지자체(대구광역시)까지로 확대 요청, 임차한 건물의 리모델링 등 자산가치 상승과 관련된 항목 집행 허가 요청</p> <p>(일부수용) 글로벌 대학인 경북대의 Maro 캠퍼스의 조성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대학 소재지 동일 광역지자체(대구광역시)에 한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 또는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임차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 자산가치 상승과 관련된 항목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 재원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수용 곤란 ※ 「국립대학회계법」 제26조(재산관리) ①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,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. 	경북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	'25.6.9 ~ '29.6.8..	



규제특례 내용	적용대상 (고등교육기관)	적용기간
<p>② (영남이공대) 산업체 인근지역(동일 생활권인 경북지역 내)까지 임차한 토지 및 건축물을 교지·교사로 인정 요청</p> <p>(일부수용) 해당 대학 소재지 동일 광역지자체(대구광역시)에 한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지 또는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</p> <p>※ 광역지자체를 벗어나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교지의 일체성 및 관리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</p> <p>③ (대구한의대) 기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(고시 제2025-217호)된 교지 외 추가 지정* 요청</p> <p>* 영덕캠퍼스 :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→ (추가) 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 청도캠퍼스 : 청도평생학습행복관→ (추가) 청도상상마루</p> <p>(조건부수용) 글로벌 대학인 대구한의대의 '노마드(로컬)캠퍼스'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기 지정된 시설 외 영덕캠퍼스(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), 청도캠퍼스(청도상상마루)를 추가</p> <p>* (경산캠) 바이오+헬스, (영덕캠) 기능성 소재+웰니스, (청도캠) 기능성 식품+치유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공통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준수 조건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 시설의 활용이 일시적·보조적 수준이 아닌,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이론 수업이 상시로 이루어 질 경우 그 위치가 단일교지 인정요건(20km이내 또는 동일 시군구)에 부합하지 않는 한 "위치변경 인가" 절차 진행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특례운영시 고려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)교지는 교육·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, 2)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, 3)교수·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「학교보건법」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·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▶ 건축물 또는 토지에 지상권,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을 설정(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5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)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</div>		
<p>④ 표준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지원비율 확대</p> <p>(규제)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고시) 제30조제5항제3호</p> <p>(일부수용) 현장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으로 실습기관의 실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양질의 실습처 발굴 및 현장실습학기제 내실화 가능</p> <p>- 다만, 대학의 규제특례 적용여부에 따라 실습기관에 대한 표준 현장실습비 환급액 편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, 실습생 간 실습기회 획득 형평성 보장을 위해 타 지역에 준한 지원을 상향 대상 실습기관 범위 설정 필요</p> <p>○ 따라서, '공공기관·출연연 또는 정부·지자체 지정·관리 산업체' 대상 표준 현장 실습지원비 지원을 한도 상향 수용(25% → 50%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규제특례 적용 대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규제특례 적용 대상 실습기관은 '공공기관·출연연 또는 정부·지자체 지정·관리 산업체'로 한정함 </div>	<p>경북대학교, 계명대학교, 영남이공대학교, 계명문화대학교, 영진전문대학교, 대구공업대학교, 대구보건대학교, 수성대학교, 대구과학대학교</p>	<p>'25.6.9. ~ '29.6.8.</p>



규제특례 내용	적용대상 (고등교육기관)	적용기간
<p>㉔ 강사 주당 강의시간 제한 완화 (규제)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 (수용) 강사의 강의시간을 주당 6시간으로 제한한 취지는 다수의 강사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면서도, 대학이 전임교원에 비해 강의료가 저렴한 강사를 과도하게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현재 지역 내 대학 수가 적어 강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고,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- 강사의 강의시간을 매주 9시간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규제특례 부여 <p>※ 특례운영시 고려사항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과정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강사 배정 시 과목의 필요성, 강사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</p>	<p>국립경국대학교</p>	<p>'26.06.12 ~ '30.06.11.</p>

2026년 6월 12일

교육부장관 (인)

